

중증장애인 취업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서

협약서

(주)제이민과 충북경영자총협회는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취감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‘중증장애인’ 이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‘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’ 제4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협약내용 및 기관역할) 협력기관은 장애인 훈련생의 업무교육 및 취업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사항에 적극 협조한다.

1. 제이민

- 취업연계 및 취업과 관련된 제반 교육 제공
- 심리상담 (업무 관련 또는 개인 고충상담 등)
- 직무 및 기타 교육 (직장예절, 교양, 컴퓨터 활용 등)

2. 충북경영자총협회

- 충북지역 내 회원기업의 장애인 취업 활성화(특히, 중증장애인)에 관한 제반 사항

제4조(개인정보보호 및 기밀유지)

‘제이민’과 ‘충북경영자총협회’는 상호협력, 교류 등을 통해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.

제5조(협약의 해지)

‘제이민’과 ‘충북경영자총협회’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충북경영자총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익에 위해가 될 경우
2. 제3조에 명시된 협약 내용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

제6조(효력발생 및 유효기간) 본 협약은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해지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제7조(협의조정)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.

제8조(협약의 보관) 본 협약서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원본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협약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1년 12월 7일



회장 이상철

이상철



회장 윤태한

윤태한